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예산총칙]]

제 1조 2025년도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326,906천원으로 한다.

합 계		4,326,906		
장애인 복지관	복지관	2,765,699		
	주간이용시설	279,500		
	장애인활동지원	1,281,707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1) 관간 전용 또는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보조금, 지정후원금,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

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2025년도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예산

* 옥천군장애인복지관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기관별	계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자체부담금		계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잡지출		예비비및기타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총 계	4,326,906	2,716,899	62.8	52,600	1.2	1,557,407	36.0	4,326,906	3,059,087	70.7	62,000	1.4	1,149,969	26.6	1,140	0.0	54,710	1.3	
장애인복지관	복지관	2,765,699	2,482,129	89.7	52,600	1.9	230,970	8.4	2,765,699	1,669,110	60.4	24,500	0.9	1,036,489	37.5	1,000	0.0	34,600	1.3
	주간이용시설	279,500	234,770	84.0	0	0.0	44,730	16.0	279,500	226,370	81.0	6,500	2.3	26,480	9.5	40	0.0	20,110	7.2
	활동지원사업	1,281,707	0	0.0	0	0.0	1,281,707	100.0	1,281,707	1,163,607	90.8	31,000	2.4	87,000	6.8	100	0.0	0	0.0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장애인복지관



목천군장애인복지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장애인복지관

세입 예산액 2,765,699천원

세출 예산액 2,765,699천원

세입. 세출 차인잔액 없음



목천군장애인복지관

[[예 산 총 칙]]

제 1조 2025년도 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765,699천원으로 한다.

(단위 : 천원)

세입	계	2,765,699	세출	계	2,765,699
	사업수입	152,900		사무비	1,669,110
	보조금수입	2,482,129		재산조성비	24,500
	후원금수입	52,600		사업비	1,036,489
	전입금	5,000		잡지출	1,000
	이월금	72,070		예비비및기타	34,600
	잡수입	1,000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1) 관간 전용 또는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보조금, 지정후원금,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

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2025년도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 (B)	증 감(B-A)		관 항 목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 (B)	증 감(B-A)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2,999,698	2,765,699	△233,999	△7.8	합 계	2,999,698	2,765,699	△233,999	△7.8
01 사업수입	60,600	152,900	92,300	152.3	01 사무비	1,618,103	1,669,110	51,007	3.2
02 보조금수입	2,703,614	2,482,129	△221,485	△8.2	02 재산조성비	25,900	24,500	△1,400	△5.4
03 후원금수입	87,710	52,600	△35,110	△40.0	03 사업비	1,272,184	1,036,489	△235,695	△18.5
04 전입금	5,000	5,000	0	0.0	04 잡지출	12,798	1,000	△11,798	△92.2
05 이월금	140,184	72,070	△68,114	△48.6	05 예비비및기타	70,713	34,600	△36,113	△51.1
06 잡수입	2,590	1,000	△1,590	△61.4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목천군장애인복지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세입 예산액 279,500천원

세출 예산액 279,500천원

세입. 세출 차인잔액 없음



목천군장애인복지관

[[예산총칙]]

제 1조 2025년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79,500천원으로 한다.

(단위 : 천원)

세입	계	279,500	세출	계	279,500
	사업수입	14,400		사무비	226,370
	보조금수입	234,770		재산조성비	6,500
	이월금	30,290		사업비	26,480
	잡수입	40		잡지출	40
				예비비및기타	20,110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1) 관간 전용 또는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보조금, 지정후원금,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

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2025년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세입.세출 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2024년예산 (A)	2025년예산 (B)	증 감(B-A)		관 항 목	2024년예산 (A)	2025년예산 (B)	증 감(B-A)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282,183	279,500	△2,683	△1.0	합 계	282,183	279,500	△2,683	△1.0
01 사업수입	14,400	14,400	0	0.0	01 사무비	220,590	226,370	5,780	2.6
02 보조금수입	228,990	234,770	5,780	2.5	02 재산조성비	8,200	6,500	△1,700	△20.7
03 이 월 금	38,703	30,290	△8,413	△21.7	03 사업비	26,040	26,480	440	1.7
04 잡 수 입	90	40	△50	△55.6	04 잡지출	229	40	△189	△82.5
					05 예비비및기타	27,124	20,110	△7,014	△25.9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목천군장애인복지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 예산액 1,281,707천원

세출 예산액 1,281,707천원

세입. 세출 차인잔액 없음



목천군장애인복지관

[[예산총칙]]

제 1조 2025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281,707천원으로 한다.

(단위 : 천원)

세입	계	1,281,707	세출	계	1,281,707
	사업수입	1,131,607		사무비	1,163,607
	이월금	150,000		재산조성비	31,000
	잡수입	100		사업비	87,000
				잡지출	100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1) 관간 전용 또는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보조금, 지정후원금,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

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2025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세출 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2024년예산 (A)	2025년예산 (B)	증 감(B-A)		관 항 목	2024년예산 (A)	2025년예산 (B)	증 감(B-A)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208,357	1,281,707	73,350	6.1	합 계	1,208,357	1,281,707	73,350	6.1
01 사업수입	1,086,424	1,131,607	45,183	4.2	01 사무비	1,092,264	1,163,607	71,343	6.5
02 이 월 금	121,833	150,000	28,167	23.1	02 재산조성비	32,000	31,000	△1,000	△3.1
03 잡 수 입	100	100	0	0.0	03 사업비	84,000	87,000	3,000	3.6
					04 잡지출	93	100	7	7.5